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현행 조례에서는 시기조정 심의대상 구역 선정에 있어 기존에 시기조정을 받은 구역의 이주실행이 조정 받은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며, 이로 인해 기 시기조정 구역의 변경된 이주시기가 주변 정비사업 구역의 이주시기와 중복되어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○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 시기조정 구역 가운데 이주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조정 심의를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특히 주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의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항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